

의 안 번 호	1479	[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를 건]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8. 10. 5.(금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0. 10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0. 19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조수관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사업내용
 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급
- 출 연 금 : 5,563천원
- 산출기준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 -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089,548천원 × 1.5 / 10,000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출연금 동의를 건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,
- 해당 금액을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“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어,
- 본 동의를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 금액이 적정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